

『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12월 18일

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「주차장법」 및 「주택법」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,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

다. 주요내용

○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
(안 제13조2①, 안 제13조2②)

- 부지면적의 0.6% 이상

○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(별표 2)

- 시설종류 상위법 적용(장레식장, 수련시설, 창고시설 등 추가)
-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.5대,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.3대

라. 참고사항

○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제2항

○ 「주차장법시행령」 제6조제1항(별표 1)

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 및 제6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,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규정
(안 제13조의2①, 안 제13조의2②)
 - 부지 면적의 0.6% 이상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[별표 2]
 - 상위법 적용에 따라 장레식장, 수련시설, 창고시설 등 추가
 -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.5대,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.3대

○ 검토 결과

- 「주차장법」과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,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
-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의 경우 「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6항이 2009. 11. 5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,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이도 상위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, [별표2] (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) 시설물 5의 설치기준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